

영등포구의회  
제18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4. 27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58호로 2015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통합조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 4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업무의 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개별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사회적기업 육성법      ○ 협동조합 기본법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근거를 두고 2010.9.10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사회적기업 조례’라 한다)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근거를 두고 2013.9.26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협동조합 조례’라 한다)가 2014.4.24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사회적경제 조례’라 한다)로 통합 제정 되었으며 ‘사회적기업 조례’는 통합조례 제정시 폐지 되었으나 ‘협동조합 조례’는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상태임.
- 이번 폐지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‘협동조합 조례’와 통합 조례인 ‘사회적경제 조례’의 중복으로 인한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, 입법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‘협동조합 조례를’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정비라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사회적기업 육성법

**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**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## 2 협동조합 기본법

**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**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·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.